

## <제6차 공공투자연구포럼>

###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관리의 발전 방향 -

#### □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대
-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제도 및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정책기조 파악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관리의 발전 방향 모색

#### □ 포럼개요

-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4:00 ~ 18:00
- 장 소: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행정안전부 서기관, 충남도청 예산담당관 및 시·군청 예산 담당 공무원, 전국 시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임직원, 충남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 등
- 주 관: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주 제: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및 대응전략  
2)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 프로그램

시간	소요 시간	내 용
	14:00~14:05	
14:05~14:10	5'	축사 윤희(충남연구원장)
14:10~15:10	60'	주제발표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및 대응전략 - 김상길 서기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 지방 공공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 박영민 박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5:10~15:20	10'	휴식
15:20~17:00	100'	종합토론 · 좌장: 이세구 센터장(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 토론: 1) 조남건 센터장(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2) 윤형호 소장(서울공공투자분석센터) 3) 박성덕 센터장(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 4) 송지영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5) 박대영 박사(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6) 임재영 박사(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폐 회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및 대응전략

2018. 12월



행정안전부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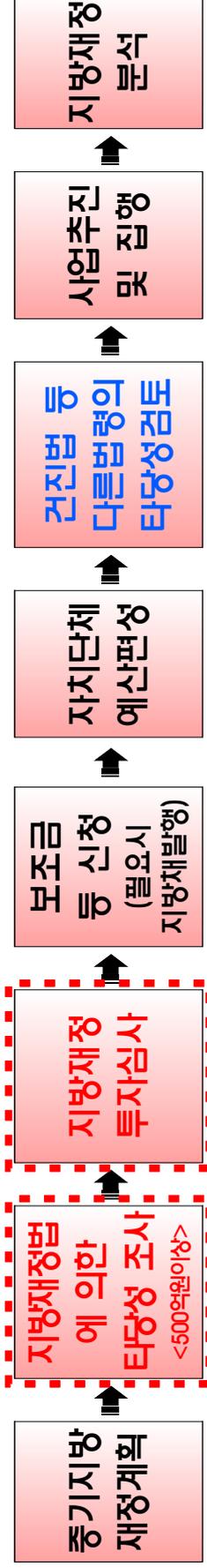
- I. 투자심사 개요 및 현황
- II. 투자심사 주요 제도개선 사항
- III.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개요 및 운영방향
- IV. 구체적인 심사자료 작성방법
- V. 2018년도 시행된 투자심사관련 제도개선 사항
- VI. 지방 투자심사 방향
- VII. 투자심사관련 감사사례
- VIII. 투자심사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I 투자심사 개요 및 현황

## I 개 요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 예산편성 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도입되어 운용(25년)

###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 2

# 투자심사 제도 운영 기본 방향

##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지방재정

### 건전한 지방재정

#### 관리제도로 정착·운영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여 사업 계획성·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를 확행 하여 재정낭비 최소화

### 투자심사의

#### 객관성·타당성 제고

- 한정된 투자자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연도별로 적정 배분
- 주요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 확보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국가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운영하여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 사후평가 강화를

####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

- 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제도의 내실화 도모

### 3

## 심사대상 및 유형

- 자체심사 : 기초(20~60억 미만 투자사업 / 1~3억 미만 행사성·홍보관사업)  
광역(40~200억 미만 투자사업 / 3~30억 미만 행사성·홍보관사업)
- 의뢰심사 : 광역(기초 60~200억 미만 투자사업 / 3~30억 미만 행사성·홍보관사업)  
중앙(기초 200억원·광역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 30억 이상 행사성·홍보관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 이행

### 4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7개 분야 심사

- ①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⑦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 심사절차 및 결과 조치

- 심사 의뢰(1.31, 3.31, 8.31까지) → 관계부처 의견조회(2, 4, 9월 중) → 실무 검토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통보(3.31, 6.30, 10.31까지)

### ※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 ◆ (구성) 지방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 지방재정 및 관련분야 국·과장 등 공무원
- ◆ (분야) ① 일반행정·환경보호, ② 문화·관광 ③ 사회복지·산업 ④ 수송·교통  
⑤ 국토·지역개발 등 분과위 운영 가능

- 행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 심사결과를 국고보조금·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발행 승인 등과 연계하여 운영

- ◆ **(적 정)**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및 정상추진
- ◆ **(조건부)** 비교전 단순한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추진
- ◆ **(재검토)**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채무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 ◆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사업(민간영역 등)

## < 최근 6년간 연도별 중앙심사 실적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215건	287건	482건	447건	553건	592
적정	44건(20%)	39건(13%)	70건(15%)	39건(9%)	28건(5%)	52(9%)
조건부	105건(49%)	157건(55%)	257건(53%)	249건(56%)	312건(59%)	370(62%)
미승인*	66건(31%)	91건(32%)	155건(32%)	159건(35%)	193건(36%)	170(29%)

\* 미승인 = 재검토 + 부적정 + 반려

## < 2017년 심사기관별 심사결과 >

(단위 : 건, 억원)

구분	총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반려	미승인*
계	4,851	2,170	2,230	385	66	9.3%
중앙	592	52(8.8%)	370(62.5%)	153	17	28.7%
광역	1,063	340(21.2%)	1,006(62.8%)	209	48	16.0%
기초	2,656	1,778(66.9%)	854(32.2%)	23	1	0.9%
금액	498,285	110,953	298,798	70,840	17,694	

※ 2015년 심사결과 미승인 비율 : 중앙 35.5%, 시도 13.1%, 시군구 1.9%

※ 2016년 심사결과 미승인 비율 : 중앙 36.4%, 시도 15.1%, 시군구 1.6%

\* 미승인 = 재검토 + 부적정 + 반려

## Ⅱ 투자심사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연 혁

- '94. 12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 '01.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범위 확대 등 심사 기능 강화
  - 1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 2개 이상 시도 관련 사업을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부적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지방채발행 승인 제한
- '05. 12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무화
- '09. 11월 물가상승률 반영,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심사대상 축소
  - 심사대상을 기초 10억원 → 20억원 이상, 광역 20억원 → 40억원 이상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을 200억원 →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
- '09. 2월 호화과대청사 신축사업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 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상급기관 심사 의무화 (기초→광역, 광역→중앙)

## (1) 행사성 사업관련 투자심사 대상 확대(2010년)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광역 :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기초 : 5억원 이상→3억원 이상)하고,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대상을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으로 종전보다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강화

## &lt; 심사기관별 행사성사업의 투자심사대상 조정사항 &gt;

구 분	종 전	개 선
시·군·구 자체심사	· 5억원 ~ 10억원	· 3억원 ~ 5억원
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	· (의뢰심사) 10억원 ~ 30억원 · (자체심사) 10억원 ~ 30억원	· (의뢰심사) 5억원 ~ 30억원 · (자체심사) 5억원 ~ 30억원
중앙의뢰 심사	· 30억원 이상	· 좌동

## (2) 홍보관 건립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대폭 확대(2011년)

- 홍보관 건립사업은 그간 일반 투자사업의 심사기준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 동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호화과대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성 사업의 심사기준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심사대상을 크게 늘림

### < 홍보관 건립사업 투자심사대상 조정사항 >

구 분	종 전	개 선
시·군·구 자체심사	· 20억원 ~ 50억원	· 3억원 ~ 5억원
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	· (의뢰심사) 50억원 ~ 300억원 · (자체심사) 40억원 ~ 300억원	· (의뢰심사) 5억원 ~ 30억원 · (자체심사) 5억원 ~ 30억원
중앙의뢰 심사	· 30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재정위기관체 지정 지자체 투자사업은 재정건전화 계획 미반영 시 예산편성 불가
-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여 중복 방지
- [청사 신축前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 2013년 제도개선 주요내용

### (1) 의뢰심사 비중 대폭 확대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이 두드러져 심사의 객관성·엄정성 제고하기 위하여
- 의뢰심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불승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의뢰 심사는 광역과 기초의 심사대상을 차등 적용
  - \* 불승인(재검토 + 부적정 + 반려) 비율(2015년 기준)
  - 중앙의뢰 심사(35%), 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12%), 시·군·구 자체심사(2%)

### < 심사기관별 일반투자사업의 투·용자심사대상 조정사항 >

구 분	종 전	개 선
시·군·구 자체심사	· 20억원 ~ 50억원	· 20억원 ~ 40억원
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	· (의뢰심사) 50억원 ~ 300억원 · (자체심사) 40억원 ~ 300억원	· (의뢰심사) 40억원 ~ 100억원 · (자체심사) 40억원 ~ 200억원
중앙의뢰 심사	· 300억원 이상	· (기초단체) 100억원 이상 · (광역단체) 200억원 이상

## (2)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는 의뢰심사 의무화

-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은 예외적으로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자체심사 대상이어서
- 호화·과대 공공 시설들도 전액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심사로 처리되므로 그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곤란\*하였음
- ※ 사례) ○○시는 ○○ 종합복지센터(573억원, '09.10 자체심사), ○○동 주민센터(418억원, '09.10 자체심사) 등 대형 공공 시설들을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 자체심사 처리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 < 의무적인 의뢰심사 대상사업 조정사항 >

종 전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의 모든 청사 신축사업(주민센터 등 포함)</li> <li>· 문화시설(문화예술킨흥법의 문화시설 ※ 도서관은 제외)</li> <li>·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문 체육시설 ※ 생활 및 직장체육 시설은 제외)</li> </ul>

### (3) 기재부 심의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심사대상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은 전부 투자심사를 제외\*하였으나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엄정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새롭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포함
- \* 제외근거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별표 규정에 명시
- \*\*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다만, BTL사업은 1,000억원 미만)

### (4)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도 단일 자치단체 사업과 동일하게 심사

- 최근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이 정부 시책적으로 권장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단일 자치단체 추진사업과 동일한 심사기준 금액을 적용
- <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투자심사 기준금액 조정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광역단체	· 중앙 : 10억 이상	· 자체 : 10억 ~ 200억 · 중앙 : 200억 이상
기초단체	· 자체 : 5억 ~ 10억, 광역 : 10억 이상 · 중앙 : 300억 이상	· 자체 : 5억 ~ 40억, 광역 : 40억 ~ 100억 · 중앙 : 100억 이상

< 현행(중전) 심사기준별 투자심사대상 금액기준 >

구 분	자체심사	광역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기초단체	·20~40억(50억) 투자사업 ·3~5억 행사·홍보관사업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사업 (청사, 문화체육시설 제외)	·40(50)~100(300)억 미만 투자사업 ·5~30억 미만 행사·홍보관 사업 ·전액 자체재원 기초단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광역) 200(300)억 이상 (기초) 100(300)억 이상 투자사업 ·30억 이상 행사·홍보관 사업 ·전액 자체재원 광역단체 청사, 문화체육시설
	광역단체	·40~200억(300억) 재정사업 ·5~30억 미만 행사·홍보관 사업 ·40억원 이상 전액 자부담 사업 (청사, 문화체육시설 제외)	-

※ ( ) 내의 숫자는 중전 심사규칙에 따른 심사기준 금액임

## (1)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설치·운영

○ 현 황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자치단체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조사

기관은 자치단체 사업 주관부서에서 선정, 개별 시행

## ○ 문제점

①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어 수요 부풀리기 등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실정

※ 검찰 발표('12. 4. 5)결과, ○○ 경전철사업은 ○○시와 용역기관(○○○○연구원)이 은밀히 협의하여 교통수요예측을 실제보다 3배이상 부풀려 B/C비율 높임

- ② 엔지니어링 업체가 다수인 타당성조사기관의 특성상 사업규모 산출, 공간배치 등 기술적 측면 위주 분석에 그치고, 해당 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사업 타당성분석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등 조사의 전문성이 취약한 수준
- ※ 2013년 중앙 투·융자심사사업(287건) 중 타당성 조사(142건) 기관 분석
- 엔지니어링 업체(65건), 공공연구원(45건), 민간연구원(13건), KDI 등 예비타당성조사 전담기관(11건), 시도 출연연구원(8건)
- 지방재정법 개정( '14. 5.28, 시행 ' [14.11.29](#))
- 자치단체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하는 것처럼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담
  - 자치단체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자치단체 대형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치)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변경

## (2) 채무보증 등 채무부담행위 투자심사 대상 포함

### ○ 현황

- 감사원의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12.11.12~12.14) 결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 민간에서 조달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보증하거나, 산업단지 조성 후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등 실질적 재정부담 사례 다수 지적

※ 사례) ○○○도 ○○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지방의회 의결없이 편법적인 채무보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처리

### ○ 문제점

- 그간 투자사업 재원이 전액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경우 채무보증 등 실질적 지자체 재정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구분, 투자심사 제외
-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을 개정('13. 6.20)하여 채무보증 등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 '14. 5.28, 시행 ' 14.11.29)

- 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조),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13조), 예산외 의무부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을 한 투자사업은 향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 예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소위 '책임분양' )

-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되는 일반 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되 투자심사 시기는 지방의회 의결 이전에 받도록 함

### (3) 기타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투자심사 대상금액 상향(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14.11.28.,

시행 ' 14.11.29.)

- 타 시도와 공동 추진 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타 시·군·자치구와 공동 추진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체심사 대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14.11.28., 시행 ' 14.11.29.) 및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14.12.12. 자치단체 통보) 주요 사항

① 투자심사 확대 :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심사 구분	의 회	심 사
제 1 차	1. 1 까지	2. 28 까지
제 2 차	3. 31 까지	5. 31 까지
제 3 차	6. 15 까지	8. 15 까지
제 4 차	8. 31 까지	10. 31 까지

②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정비(※ '14.11.28까지 투자심사 완료 사업은 종전 규정 적용)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아래 계산식 산정금액 초과 시 재심사 대상**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20/100 + 150억원$$

- 설계변경 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전액 자체재원으로 계획한 사업이 재원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재심사 의뢰시점 기준 전액 **자체재원이 총사업비의 90%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③ 재상정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기관 기준 설정

· 당초 투자심사기관 의뢰(다만, 총사업비 조정으로 투자심사기관 변경 시 예외)

④ 총사업비 산정대상 범위 확대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도 포함

⑤ 복합 시설물인 경우 홍보관,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해당기준 상향

· 홍보관 : 연면적의 75% 이상(기준 : 연면적 기준 없어 모두 해당)

· 청사 : 연면적의 25% 이상(기준 : 연면적 기준 없어 모두 해당)

※ 거주용 목적 시설 확대 : 관사 → 관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

· 문화·체육시설 : 연면적의 75% 이상(기준 : 50% 이상)

⑥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 확대

· 농어촌생활용수개발(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법 및 수도법)

· 하천정비(하천법→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신규)

※ 투자심사 제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대상만 적용

- ⑦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란에 신축 공공시설의 인접한 자치단체 공동활용 여부
- ⑧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구체화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제외)은 전체의 4분의 1 이내
- ⑨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구체화
- 대상사업별 개념 정의 및 총사업비 산정 방법, 신청서 작성방법 등 명시
- ⑩ 투자심사 자원분류 중 자체재원 범위를 확대
- 기존의 자체재원 인정 범위\*외에 채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간주
- \*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조경교부금(보통, 특별), 재정보전금(일반, 시책추진, 특별)
- ⑪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서식 추가
- 투 · 용자→투자, 의존재원→이전 재원, 광특→지특, 분권교부세 삭제 등
  - 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서식 추가(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신축 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등)
- 투자사업 분야 · 부문별 분류 추가 사항(020 공공질서 및 안전-026 소방)

## &lt;2015.12.24.개정&gt;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100억 미만)
-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 타당성 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등

## &lt;2016.3.30.개정&gt;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 반려근거 명확화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경우
  2.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2016.6.30.개정>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
  - 시도 : (현행) 5천만원 이상 → (개정) 모든 행사성 사업
  - 시·군·구 : (현행) 2천만원 이상 → (개정) 모든 행사성 사업
-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 및 시군구의 의뢰심사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자체심사	시·군·구	3~5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시·도	5~3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의뢰심사	시·도	시군구 5~30억원 미만	시군구 3~30억원 미만
	중앙	30억원 이상	좌 등



<2017.12.29.개정, 2018.1.1시행>

-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중앙)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4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중앙)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시군구 20~60억원미만 자체심사
- 투자심사 의뢰심사 심사횟수 조정 :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
- 「일자리창출」 항목 신설 :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 산출 고용효과를 검토
-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 Ⅲ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개요 및 운영방향**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설치·운영**

- 전문기관
  -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을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2호, ‘14.11.2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신설
- 업무범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이력관리](#),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전문기관은 객관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리 필요

## 2

### 타당성 조사 대상

-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미만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
    -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중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 및 출연 기관에의 용자·인건비 지원 등 타당성 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
  - 투자심사 재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
- 타당성 재조사 대상
  - 당초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 총사업비가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보다 증가한 사업
  -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등
- 타당성 재조사 제외대상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 확인된 사업,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행안부와 협의된 사업, 사업추진이 25%이상 진행된 사업

- 타당성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 단계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
  - 타당성 조사 결과의 투자사업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투자심사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영향)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기술적 측면)와 목적 및 검토 내용이 상이하므로 별도 추진
  - 다만, 국토부 건진법 부서와 협의, 타당성 조사결과 기 수행된 자료는 공동활용하여 같은 내용에 대한 중복 조사 방지(2017.6월)
- ※ 2013년 중앙 투자심사사업(287건) 중 타당성 조사(142건) 기관 분석 결과 엔지니어링 업체가 다수(65건)를 수행하여 사업규모 산출, 공간배치 등 기술적 측면 위주 분석에 그치고, 해당 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사업 타당성분석은 미흡한 경우가 많았음
- ※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주요지표 왜곡사례 발생, A단체 B/C 1.17→0.12, 감사원 재분석)

# IV 구체적인 심사자료 작성방법

## 1

### 수치 및 Fact 위주로 기재

- ① 문예회관 신축사업(예시)
  - (기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며,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예회관 신축이 필요
  - (개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 ~' ○○.○○, ○○○억원) 되면 현재보다 ○○○% 인구증가가 예상( '○○년 ○○○천명 → '△△년 △△△천명)됨. 또한,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 문예회관(○○○억원, 주공연장 ○○○석)인데 반해 우리시의 현 문예회관(△△년 건립, △△△억원)은 주공연장이 △△△석이며 부지가 협소하여 리모델링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 문예회관은 ○○용으로 변경하고 신규로 문예회관을 신축할 필요
- ② 하수처리시설 증설(예시)
  - (기존) ○○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상 오염부하량 조정 및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

→ (개선) 〇〇도시개발사업 추진( '〇〇.〇〇 ~' 〇〇.〇〇, 〇〇〇억원) 등으로  
 '〇〇년부터는 **하수처리 용량이 증대(〇〇〇m<sup>3</sup>/일→△△△m<sup>3</sup>/일)되므로**  
**중설이 시급**하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〇〇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완료함( '〇〇.〇〇)

## 2

### 민간투자 금액 중 자치단체 재정부담 사항은 반드시 기재

-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투자 형식이나 차입금을 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거나, 산업단지 완공 후 책임분양을 약속하는 사례 발생
-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할 경우 심사의뢰서 '5. 투자심의자료'의 '아' 항목(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구체적인 부담내역(예시 : **민간차입금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지급보증, 민간차입금 중 SPC 지분율(〇〇%) 만큼 자치단체에서 지급보증, 산업단지 완공 5년 후 미분양된 용지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한 후 책임 분양조건 등)**을 반드시 기재

## 국가 공모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세부내역 기재

- 국가에서 교육·연구·과학기술, R&D 및 전략적 사업육성 등 국가정책적 사업을 자치단체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는 일부 재원만 부담하고 부지매입 및 건축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을 자치단체에 전가시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개정('14. 1.21)하여 국가에서 관련기관을 신설·확장·이전·운영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으나 이행이 미흡
  - 따라서, 공모사업의 경우 심사의뢰서 '1. 사업개요'의 '사' 항목 하단 시도비 또는 시·군·구비란에 구체적인 부담내역(예시 : 총 〇〇〇억원 - 부지매입비 〇〇, 건축비 〇, 시설운영비 〇)을 반드시 기재

## 타당성조사 결과는 개정된 매뉴얼 기준을 적용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

- 경제적 타당성 조사관련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3가지 분석기법에 따른 결과를 기재하되
  - 이 중 누락된 분석기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할인율도 반드시 명기하되, 5.5%(4.5%)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르게 적용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 실무심사조서의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작성(예시)
  - ○○연구원 타당성조사('12. 4~'13. 1) 결과, 할인율 5.5% 적용시 B/C 1.11, 순현재가치(NPV) 1,164억원, 내부수익률 6.1%로 경제적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됨(기재오류 사례 : 타당성 확보, 사업통과, 사업추진 적정성 확보)

# V 2018년도 시행된 투자심사관련 제도개선 사항

1

## 중앙 투자심사 기준 완화 및 심사횟수 조정

- (시 도) 200억원 → 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 → 200억원 이상
- **총사업비의 8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관련 투자심사 제외**
  - ※ 부처에서 지원계획 확정시 사업타당성, 운영 효율성 검증 실시
  - ※ 행사성 사업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심의·확정하는 경우 **투자심사 미 제외**
    - 동 내용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법령체계상 모순, 기재부 지침성격으로 규정됨)
-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 2월, 5월, 8월, 10월 → **3월, 6월, 10월 실시**(자치단체 본예산편성 시기고려)

## ○ 투자심사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

-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 시 고용효과\* 검토**

\* 예시)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 임금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투자심사 이후 관리강화

-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확대 실시**
  - 자치단체별 자체 점검결과 부진사업은 자치단체 대책회의 실시,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 자치단체별 부진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365’ 공개 실시**

※ 1단계 :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우선시행('16.7월~), 2단계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17.1월~), 3단계 : 자치단체 모든 투자사업('19.1.1~)

-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 언론 및 지방의회 지적 등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컨설팅 실시

## 투자심사 위원회, 타당성 조사 횟수 등

- **중앙, 지방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 (안 제9조의3)
  - 위원회 구성 인원(21명 이내), 임기(3년이내, 1회 연임), 민간위원 위촉 비율(1/4이상),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
  - ※ 현행 21명(민간 16, 공무원 5, 위원장 민간 위촉), 소 위원회 구성(5개 분과)
  
-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및 제외근거 마련** (안 제12조)
  - 정기의되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정기심사) 1월, 3월, 6월, 8월 → **1월, 4월, 8월로 조정**
  -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사업 및 청사건립 등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 VI 지방재정 투자심사 방향(대응전략)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2조(투자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 중, 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 조달계획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 재정, 경제적 효율성
- 일자리 창출효과 등

## 1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 ◇ 자치단체내 여러 가지 사업중 다른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 사유 또는 필요성
- ◇ 계획하는 사업의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 수요도

※ 이용객 통계 등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자료 제공

##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계획하는 계획과의 연계성
-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 사업과의 연계성 등

### 3 중, 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등
- ◇ 지난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계획단계에서 검토되어 온 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계획적이고 숙성된 사업시행**

###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 ◇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사례, 부담x, 비율↓**)
- ◇ 사업기간중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고려, **지방비 부담(또는 확보) 능력**
-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빛내서 꼭 시행의 시급성**)
- ◇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캠코, LH, 공사, 민간업체**)

## 5

### 재정, 경제적 효율성

-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최소한의 수익성, 수지균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일부주민 만족↑, 재정적자 가속↓)**
-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 6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 관광시설 : 문체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지점 유료, 무료, 월별 입장객 정보)
  - ※ 공연장, 체육시설 :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의 **연중 이용객, 수입, 지출현황** 등  
(예) 문화회관 추가 신축 : 기존시설 연간 이용현황, 공연회수, 수지운영현황 등
- ◇ 앞으로 신도시, 택지개발 등 수요추세,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객관적)

- ◇ 앞장의 7가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 결과 분석**
  - 상급기관 승인, 각종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시행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착수 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 (추가고려) 기타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 VII 투자심사관련 감사 사례

1

## 행사성 사업관련

### ◇ 행사성 사업의 세부경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제 수입금 비교

(단위: 억 원)

계 획 <sup>1)</sup>		실 제					차이 (②-①)					
계①	입장료	기부금 후원금	임대 수입	기타	회장 광고 협찬	입장료	기부금 후원금	임대 수입	기타	차이 (②-①)		
3,115	1,770	780	205	142	218	1,918	997	365	281	54	221	△1,197

1)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시의 계획 기준(이하 동일함)

### ◇ 행사성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관람객 비교

(단위: 만 명)

구분	실의(A)			실제(B)			차이(B-A)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2,452	2,277	175	2,400		2,284	116
관람객	무료	579	540	39	1,074	1,021	53	481	14
	유료	1,873	1,737	136	1,326	1,263	63	△474	△73

### ◇ 주요사업이 승인심사 내용과 달리 크게 변경된 국제행사 명세

(단위: 억 원)

행사명	심의시 주요사업		실제 주요사업		변경사업	
	세부사업명	예산	세부사업명	예산	세부사업명	예산
합계	총사업비	1,002	총사업비	1,686	증가된 사업비	684
광주세계광엑스포	총사업비	100	총사업비	394	증가된 사업비	294
	행사장 기반조성	35	행사장 조성 및 운영	218	행사장조성	183
	학술발표회 및 이벤트	20	관엑스포 주제영화관 건립	75	주제영화관 건립	75
	홍보비 및 바이어 유치	30	산업전시 및 컨퍼런스	9	빛축제 행사비	30
	사무처 경상비	15	홍보유치 및 행사운영비	41	기타	6
			사무처 경상비	21		
		빛축제 행사비	30			

행사명	실의시 주요사업		실제 주요사업		변경사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합계	총사업비	1,002	총사업비	1,686	증가된 사업비	684
	총사업비	404	총사업비	455	증가된 사업비	51
	행사장 기반조성	225	경기장 시설비	168	행사운영비	51
	행사운영비	95	행사운영비	287		
	토지매입비	84				
2010제천국제한방 바이오텍스포	총사업비	200	총사업비	283	증가된 사업비	83
	행사장 기반조성	92	시설기반조성	136	시설비	26
	인건비 및 행사시설비	20	공식행사비	48	전시비	15
	행사비	25	운영비 및 인건비	31	홍보 및 운영비	20
	홍보비	28	홍보비	43	기타	22
	경상비	35	경상비	25		
	총사업비	199	총사업비	319	증가된 사업비	120
2010세계백제대전	행사비	90	운영비	15		
	기반시설비	66	행사비	162		
	홍보비	43	기반시설비	27	백제문화제 기금조성	73
			홍보비	28	추가 행사비	47
			기금조성	73		
			기타	14		
울산 세계웅기문화 엑스포	총사업비	99	총사업비	235	증가된 사업비	136
	기반시설비	76	기반시설비	105		
	행사비	7	행사비	25	기반시설비	29
	운영비	7	운영비	37	이벤트성 행사비	99
	홍보비	9	홍보비	25	기타	8
			대행사수수료	25		
		기타	18			

### ◇ 계획과 실제 총사업비 및 수입금 차이

(단위: 억 원)

행 사 명	행사주관기관	총사업비			수입금		
		계 획	실 제	차 이	계 획	실 제	차 이
합 계	-	1,002	1,686	+684	670	212	△458
광주세계광엑스포	광주광역시	100	394	+294	-	-	-
춘천 월드레저총회	춘천시	404	455	+51	268	14	△254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제천시	200	283	+83	76	68	△8
2010세계백제대전	충청남도 외 2	199	319	+120	202	107	△95
울산 세계응기문화엑스포	울산광역시	99	235	+136	124	23	△101

자치단체	사업명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사례
대구광역시	대포도서관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광역시는 2015년 6월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12월 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총사업비 498억 원, 국비 255억 원)하면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할 <b>예비비[(공사비+보상비+옹역비 등)×10%] 49.8억 원을 누락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 없이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음</b></li> </ul>
경주시	신라역사관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주시는 2016년 8월 “신라역사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3월 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총사업비 490억 원, 국비 292억 원)하면서 당초 기본계획에 누락되었던 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게 되자 총사업비 490억 원은 그대로 둔 채 기존 <b>공사비 등 38억 원을 예비비로 변경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음</b></li> </ul>
제천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천시는 2017년 7월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8월 위 사업에 대한 <b>중앙투자심사를 의뢰(총사업비 480억 원, 국비 20억 원)하면서 공연장 건축 시 포함되어야 할 무대설치비(216억 원)</b>를 총사업비에서 누락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음</li> </ul>
울산광역시	제2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광역시는 2015년 4월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총사업비 552억 원)을 수립한 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다(B/C 0.158)는 의견을 제시하자 공사비 단가(㎡당, 2,436천 원→2,100천 원)를 축소하여 총사업비 443억 원(국비 128억 원)으로 낮춘 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 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음, 이후 <b>2017년 7월 총사업비 598억 원으로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 사업 추진 중</b></li> </ul>

구분		기초	투자심사 회피사례
광역	지역		
전라남도	합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부터 총사업비 711억 원(국비: 84억 원, 군비: 36억 원, 민자: 550억 원, 대물변제: 41억 원) 규모의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누락</li> </ul>
경상북도	영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부터 총사업비 111억여 원(국비: 14.5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92.1억 원, 민자: 2억 원) 규모의 ‘영천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누락</li> </ul>
강원도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의 경우 2008년 4월 총사업비 172억 원으로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다 2010년 1월 총사업비가 314억 원으로 증액되어 구 행정안전부의 재심사를 받아야 했는데도 재심사 없이 사업 계속 추진</li> </ul>
충청북도	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3년부터 추진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전액 국비사업(100억 원)이었으나 2004년 8월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가 250억 원(국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 민자: 120억 원)으로 변경되어 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심사를 누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 총사업비 419억 원[최종 총사업비 1,749억 원(국비·도비: 262억 원, 구 국토해양부: 264억 원, 군비: 391억 원, 민자: 832억 원)] 규모의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290억 원으로 축소하여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li> </ul>
경기도	연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천군에서 2004년부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총사업비: 570억 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위 사업계획에 없는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사업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이를 타당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 감사일 현재 야구장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li> </ul>

충청남도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부터 총사업비 3,452억 원(시비: 10억 원, 민자: 3,442억 원) 규모의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누락</li> </ul>
충청남도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부터 추진한 총사업비 68억 원 규모의 '한산모시 관련 집단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시설비 23억 원을 제외하고 토지·건물매입비 45억 원에 대해서만 2008년 10월 자체투자심사 실시 후 사업 추진</li> </ul>
경상남도	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부터 추진한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 45억 원에서 92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6억 원, 민자: 67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도 경상남도 제심사를 누락</li> </ul>

### 3

## 지방자치단체 타당성 조사 미이행 현황

(단위: 억 원)

연번	기관	심사 연도	사업명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결과
				심사	총사업비 (심사일 기준)	심사 기관	심사일자	심사 시 진행단계	심사 시 진행단계	
1	경기도 분청	2007	광탄~광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360호선)	1차	1,000	자체	2007. 4. 26.	기본계획 수립 중	조건부	
2	경기도 분청	2007	신암~봉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375호선)	1차	620	자체	2007. 10. 30.	기본계획 수립 중	조건부	
3	경기도 분청	2008	가평~현리 도로 확·포장공사	1차	2,072	자체	2008. 10. 31.	실시설계 완료	조건부	
4	경기도 분청	2008	운천~탄동 도로 확·포장공사	1차	996	자체	2008. 10. 31.	실시설계 완료	적정	
5	군포	2008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1차	1,220	중앙	2008. 10. 27.	기본계획 수립 중	재검토	
		2009		2차	1,220	중앙	2009. 4. 28.	기본설계 완료	조건부	
6	양주	2011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차	998	중앙	2011. 10. 28.	공정 10% 진척	조건부	
7	이천	2009	표교-어능 도로 확·포장공사	1차	1,100	중앙	2009. 10. 20.	실시설계 완료	조건부	
		2008		1차	750	중앙	2008. 5. 14.	실시설계 완료	조건부	
		2008		2차	750	중앙	2008. 10. 27.	실시설계 완료	조건부	
8	이천	2010	유산-매곡 도로 확·포장공사	3차	750	중앙	2010. 10. 29.	실시설계 완료	조건부	
		2011		1차	500	중앙	2011. 3. 25.	기본계획 수립 중	조건부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재구성

# 4

##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 오류사례

### ◇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지표 현황

분석지표	정의	경제성 기준	장점	단점
비용/편익 비율 (B/C)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	$B/C \geq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발생 가능</li> </ul>
순현재가치 (NPV)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	$NPV \geq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li> <li>장래 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li> <li>한계 순현재가치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의 어려움</li> <li>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 발생 가능</li> </ul>
내부수익률 (IRR)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IRR \geq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li> <li>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li> </ul>

### ◇ 투자심사의뢰서의 주요 내용 왜곡 사례

연번	심사 연도	심사 기관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	왜곡 내용
1	2014	중앙	00시	00문화에솔회관 건립사업 (419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른 전국 평균 유료관객 수는 26천 명인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123천 명으로 반영하는 등 편익을 부풀린 경제성 분석 결과(B/C 1.06)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B/C 0.21)</li> </ul>
2	"	"	00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12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없는데도 운전자의 여가가치 상승 편익 등 179억 원을 계상하는 등 편익을 부풀린 경제성 분석 결과(B/C 1.62)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B/C 0.19)</li> </ul>

		왜곡 내용	
연번	심사 연도	심사 기관	사업명 (총사업비)
3	"	경기도	000 체육문화센터 및 수영장 건립사업 (191억 원)
4	"	강원도	상동 숲 치유센터 조성사업 (59억 원)
5	"	전남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 (150억 원)
6	2013	중앙	000 생태공원 조성사업 (1,494억 원)
7	"	"	00 스포츠파크 확장사업 (381억 원)
8	"	"	00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 (350억 원)
9	"	"	0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7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이용자인 대부동 인구(7,615명)가 아닌 도심권역 인구(141,207명)를 기준으로 산정한 운영수지 결과(연간 39백만 원 수익)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연간 531백만 원 손실)</li> <li>시설규모가 축소되었는데도 편익은 그대로 두고 비용만 축소하여 산출한 경제성 분석 결과(B/C 1.00)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B/C 0.80)</li> <li>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해 검증된 유료관광객 수는 1,189천 명인데도 무료관광객을 포함한 1,617천 명을 반영하는 등 입장료 수입을 부풀린 경제성 분석 결과(B/C 1.30)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B/C 0.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문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적인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 수요를 연중수요로 추정하는 등 수입을 부풀린 운영수지 결과(연간 3억 원 이상 수익)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연간 2억 원 이상 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센터의 유료공연 개최횟수를 과다 계상(인근 성산아트홀보다 95회 많은 132회로 산정)하는 등 편익을 부풀린 경제성 분석 결과(B/C 1.17)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B/C 0.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비용을 편익에 반영하는 등 편익을 부풀린 경제성 분석 결과(B/C 1.22)를 의뢰서에 작성·제출(재분석 결과 B/C 0.33)</li> </ul>

		왜곡 내용		
연번	심사 연도	심사 기관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
10	2012	"	00시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640억 원)
11	"	"	00시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535억 원)
12	"	경상남도	00군	000 어드벤처 레포츠개발 청수년수렵지구 조성사업 (167억 원)
13	"	전라남도	00군	000 테마파크 조성사업 (288억 원)
14	"	자체	00시	동부권(진안) 체육시설 건립사업(1,055억 원)
			12개	총 14개 사업 (6,020억 원)

		왜곡 내용		
10	2012	"	00시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640억 원)
11	"	"	00시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535억 원)
12	"	경상남도	00군	000 어드벤처 레포츠개발 청수년수렵지구 조성사업 (167억 원)
13	"	전라남도	00군	000 테마파크 조성사업 (288억 원)
14	"	자체	00시	동부권(진안) 체육시설 건립사업(1,055억 원)
			12개	총 14개 사업 (6,020억 원)

# 5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업

연번	지자체	사업비 집행 내용	집행액 (백만 원)
1	00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캠프 그리브스 활용 역사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355억 원, 국비 61억 원 포함)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 인데도 2012년 11월 DMZ체험관 리모델링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파주시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3,800백만 원을 지출, 1건의 사업을 2개 사업(역사공원사업, 대체시설사업)으로 분리하여 2014년 7월 각각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추진 중</li> </ul>	3,800
2	0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동 주민복지타운 조성사업”(총사업비 555억 원, 국비 118억 원 포함)의 경우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2009년 11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비로 62백만 원을 지출,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li> </ul>	62
3	0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총사업비 718억 원, 전액 자체예산)의 경우 자체투자심사 대상인데 도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보상비 및 용역비 등으로 계 17,438백만 원을 지출한 후 2014년 1월 위 사업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자체투자심사,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 재검토 필요</li> </ul>	17,438
4	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총사업비 248억 원, 전액 자체예산)의 경우 자체심사 대상 인데도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한 도로개설을 실시설계용역비로 228백만 원을 지출, 장래교통량이 적어 사업 재검토 필요</li> </ul>	228
5	00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0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3,253억 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실시설계용역비로 2,400백만 원 지출, 실수요자가 80% 이상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추진 불가</li> </ul>	2,400
합계			23,928

## VIII 투자심사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투자심사 제출 시기의 오류 : 기본 계획전, 공모 확정전
    - ※ '17.10월 심사, 00시는 11월 기본계획 수립예정인 사업을 심사의뢰
    - ※ '17. 8월 심사, 00시는 국가공모대상 사업의 경우 공모 선정전에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의뢰서의 객관적인 수요추정 오류
    - ※ 문화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이용객 수요가 중요한 시설 설치시** 현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산정 필요(예, 문체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자체 타당성 조사 오류
    - ※ 총사업비 산정(각종 부담금, 보상금, 예비비 누락), 편익 과대산정, 할인율 (5.5%) 오류, 분석기간 오류 등
  -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오류
    - 지방재정법은 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는 사전적 의미
    - 건진법 등 **기타 법령의 타당성 검토 등은 사업추진단계에서 총사업비 등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절차임**
- ※'18.2월 00자치단체는건진법에 의해 타당성을 안료,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제외요청

## IX 자치단체 고려사항

- **투자심사 대상사업 발굴의 신중한 검토**
  - ※ 자치단체에서 공공성제고, 행정서비스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 ※ 유지 운영관리는 누가하고, 총 비용산정 및 비용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지?
- **유사한 유형이지만,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한 차별화 전략**
  - ※ 관련 중앙부처, 관계 전문가 등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이용자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자문(초기단계에서부터 충실한 계획마련)
- **운영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 시설건립 비용외 매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명확한 추계로 적자 발생분에 대한 최소한의 자체 충당노력 발굴

□ 2016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자료 : 지방재정365) \*(-)순수의 상위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운영 방식	건물 면적(m <sup>2</sup> )	관리 인력	연간 이용인원	건립 비용	비용	수익	순이익 (백만원)
광주본청	광주문화예술회관	1991.10.21	직영	47,087	55	205,412	44,776	21,638	710	-20,928
인천본청	인천문화예술회관	1994.04.08	직영	43,313	282	213,241	58,658	21,058	1,103	-19,955
울산본청	울산문화예술회관	1995.07.10	직영	27,078	254	454,474	43,661	19,485	952	-18,533
서울본청	서울역사박물관	1998.02.03	직영	20,883	259	16,687,535	31,403	14,864	724	-14,140
인천남구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1992.05.01	위탁	3,808	15	65,000	13,097	13,097		-13,097
서울본청	한성백제박물관	2011.12.31	직영	19,423	98	757,868	29,337	11,363	344	-11,019
서울본청	서울시립미술관	2002.01.31	직영	13,433	144	1,818,375	27,804	11,972	1,164	-10,809
서울본청	서울월드컵경기장	2001.12.27	위탁	58,552	92	887,619	83,642	9,650	19	-9,631
대구본청	대구문화예술회관	1990.05.21	직영	24,124	66	655,396	26,200	9,340	700	-8,640
대전본청	한밭종합운동장	1964.01.01	위탁	62,755	62	1,043,394	39,105	9,987	1,489	-8,498
부산본청	영화의 전당	2011.0.9.	위탁	54,335	48	838,906	167,850	12,024	4,035	-7,989
경기화성시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2011.09.16	위탁	18,384	103	774,304	49,350	9,603	2,425	-7,177
부산본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3.	직영	22,826	47	556,713	41,192	7,384	337	-7,046
대구본청	대구오페라하우스	2003.08.07	위탁	17,268	29	86,926	44,000	7,650	763	-6,887
대구본청	대구미술관	2011.05.26	직영	21,701	59	191,724	67,569	6,986	349	-6,637
부산본청	부산문화회관	1988.0.7.	위탁	44,009	54	240,000	44,600	7,400	1,300	-6,100
충북청주시	청주시립도서관	2013.01.25	직영	5,370	62	532,994	13,150	6,073	21	-6,052
인천본청	미추홀도서관	2009.06.23	직영	13,099	43	718,743	21,467	5,991	28	-5,963
대구본청	대구콘서트하우스	1975.10.05	직영	26,794	22	119,301	54,880	6,703	748	-5,955
경기화성시	유엔아이센터	2009.01.30	위탁	28,067	45	666,652	62,123	8,062	2,720	-5,343
경기군포시	중앙도서관	2008.04.29	직영	12,268	66	1,481,287	19,300	5,152	75	-5,077

□ 2016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자료 : 지방재정365) \*(+)순수의 상위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운영 방식	건물 면적(m <sup>2</sup> )	관리 인력	연간 이용인원	건립 비용	비용	수익	순수의
서울본청	잠실야구장	1982.07.15	위탁	26,331	40	2,576,642	21,646	2,745	19,712	16,967
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민회관	1992.12.29	위탁	3,290	17	127,150	16,191	660	4,850	4,190
경남창원시	창원자전거(경륜)경기장	1997.09.30	위탁	42,339	302	528,236	69,216	33,229	36,253	3,024
경기성남시	성남아트센터	2005.09.20	위탁	47,949	131	391,919	152,385	25,484	27,354	1,870
서울본청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984.09.29	직영	75,469	30	725,409	46,300	6,656	8,466	1,811
경기안양시	안양아트센터	1989.12.05	위탁	15,609	55	136,441	44,330	13,407	15,110	1,703
경기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2007.05.10	위탁	8,707	26	83,649	37,400	4,969	6,499	1,530
서울본청	세종문화회관	1978.04.14	위탁	13,081	423	1,987,428	28,533	37,260	38,637	1,377
인천본청	문학경기장(야구장포함)	2002.02.25	위탁	34,355	7	2,200,000	330,500	6,936	8,221	1,285
전남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013.06.15	위탁	4,677	11	220,353	20,450	718	1,833	1,115
경기성남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2015.11.30	위탁	1,035	15	206,404	25,308	1,519	2,621	1,102
경남밀양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6.05.29	위탁	9,811	17	138,180	45,858	3,732	4,760	1,028
서울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	2002.05.10	위탁	8,650	21	73,560	22,132	3,548	4,247	699
전남본청	F1국제자동차경주장	2011.09.30	위탁	73,225	48	192,803	428,500	3,256	3,917	662
경기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	2008.11.19	위탁	13,636	26	367,053	30,168	1,204	1,861	657
광주본청	남부대국제수영장	2015.03.31	위탁	19,398	26	77,654	64,408	2,288	2,919	631
서울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00.07.26	위탁	7,464	51	589,347	12,728	4,033	4,605	572
경기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04.05.08	위탁	15,042	56	889,593	24,822	4,822	5,395	572
부산본청	금정체육공원	2002.07	위탁	36,542	84	332,378	75,232	27,855	28,413	558
경기용인시	용인시축구센터	2004.10.22	위탁	9,782	35	64,887	31,100	3,932	4,486	554

## 인구급감 지방도시 공공시설 97% 적자(YTN, 2017.7.31.)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대부분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자 공공시설 가운데 2010년 이후 완공된 공공시설이 40%나 포함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국토연구원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른바 축소도시 20곳에 있는 도서관과 공연장,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실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 59개 시설 가운데 무려 57곳 97%가 적자 상태였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이들 공공시설의 적자 규모는 327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전북 익산시가 연간 67억9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경북 김천시와 강원 태백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적자를 낸 공공시설 가운데 22곳은 2010년 이후 완공된 새 건물로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건설을 강행해 적자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적자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수요를 과하게 예측해 세금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구 축소도시에서 공공시설 유휴화를 막으려면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축소도시는 성장 중심의 개발 계획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 00일보 2017.11.2.(목)

## ● 공공시설 해법 없는 적자운영

행정안전부가 올해 첫 공개한 전남도내 공공시설 운영 상황은 암담하다. 공개대상 50곳 중 적자 운영 공공시설만 44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행정부가 공개한 2015년 도내 공공시설 49곳 중 40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적자 경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예산을 들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특히 도시 주민에 비해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무리하게 들여 건립한다면 애기가 달라진다. 건물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후 운영비도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발표한 도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1년새 운영비용이 396억4900만원에서 529억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공공시설물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 ● 인구감소 간과할 경우 재앙 될수도

전남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건립비를 들여 만든 공공시설물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이미 인구 200만이 붕괴됐고, 190만명선도 무너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 이용객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도내 공공시설물 이용객은 2015년 836만 3058명에서 2016년엔 775만 2232명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엔 신규시설 1곳이 추가됐지만 이용객이 급감한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지역에선 정부가 지정한 인구 축소도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이 많아 해당 지역의 재정압박이 더 클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대부분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했다. 국토연구원이 '축소 도시(shrinking city)'로 분류한 20개 도시에 있는 도서관·공연장·박물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59개 시설 중 57곳(97%)이 적자 상태였다. 이 공공시설들의 연간(2015년) 적자 규모는 327억원이 넘었다.

전남에도 여수시와 나주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된 곳이다. 여수는 건립비용 100억 원 이상 규모인 공공시설은 망마경기장 한곳 뿐이다. 망마경기장은 2015년 3억 7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2016년엔 4억 7100만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나주시는 더 심각하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은 총 4곳에 달한다. 나주 스포츠파크내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관, 물리경기장의 총 운영수익은 2015년 3억 1500만원에서 2016년 2억 83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운영비용은 2015년, 2016년 모두 6억 9000만원이 소요됐다. 2년간 적자만 7억 8200만원이 발생했다. 물리경기장은 2년간 운영수익이 전무했다. 인구 감소에 맞춰 공공시설에 대한 '다이어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축소 도시에서 공공시설 유희화를 막으려면 인근 지역 시·군이 협조해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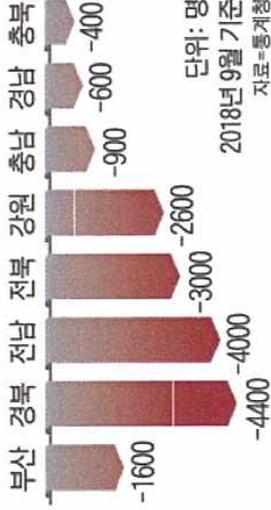
# 부산마저... 광역시로 번진 인구감소

부산·경남·충북·충남 신생아 수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보다 적어 광역단체 17곳 중 8곳 인구감소

올 한 해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여덟 곳에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못 따라 잡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것이다. 전쟁도 기근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본지가 통계청의 올해 1~9월치 출생·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 광역단체 중 부산·경남·충북·충남에서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 광역단체는 전남·전북·강원·경

올해 시도별 인구 자연 감소 현황



보다 사망이 많았다. 전국 6대 광역시는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가 번져 나갈 전망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올해 1~9월 각각 600명, 1300명 차이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간신히 앞서갔다. 통계청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내려갔다고 지난달 집계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9대가 확실시된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가리킨다.

신생아 수가 올해 32만명대에서 2020년 33만명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후년인 2020년부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 “2029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이 정부 예측을 9년 앞질러간 것이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A4면에 계속

북 등 네 곳이었다. 불과 1년 만에 자연 감소 현상이 벌어지는 지역이 두 배로 늘었을 뿐 아니라, 농어촌이 아닌 대도시 부산까지 포함된 것이다.

인구 전문가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10월 이후에도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없고, 사망자만 계속 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전국 10도(道) 중 경기·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

# ‘줄줄 새는’ 지방재정 ... 시장 집약에 도로 내고 철거할 건물 고가 매입

## 2·골 마구잡이 늘린 예산, 횡단간 뚝뚝이

#1. 충남 홍성군은 2015~2018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정에 없 는 생일축하 및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278 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 고 홍성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에 과다 하게 지급된 공사비 3,949만원을 건설사 로부터 환수하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2014년 파손된 도로에 아스콘(아스팔트 콘리트)을 채우는 공사를 맡긴 건설사 가 규정보다 얇게 아스콘을 시공했기 때 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무시하거나 순 악을 따지지 않고 추박구박 사업을 벌 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령위반 등이 적발돼 깎아는 자 재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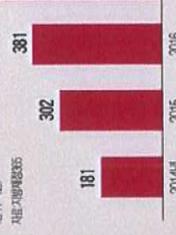
자치단체의 보여주기식 축제와 행사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 난해 열린 지자체 축제·행사 472건 가운 데 흑자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전국 지자 체 축제·행사의 적자 규모는 355억원에 달했다.

### 예산 결산에 모두 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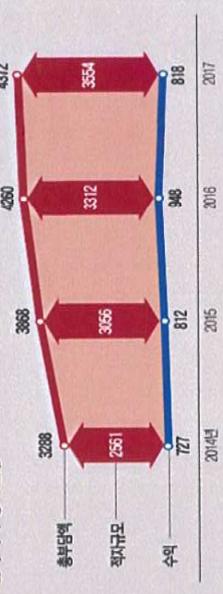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 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삭감된 지자체 교부금은 489억원이었다. 행정부 가 법령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한 자 재 체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깎은 결과다. 지 자체 교부금 삭감 규모는 2014년 181억원 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사·전발로 삭감된 지자체 교부금 (단위:억 원)



전국 축제·행사 현황 (단위:억 원)



지자체 축제·행사 (단위:만 원)

연도	총액	수익
2014년	4억 1000	1억 6000
2015년	1억 6000	1억 4000
2016년	1억 4000	100

### ‘법령 위반’ 지자체 교부금 삭감액 2014년 181억 → 작년 489억 정중 흑자 낸 행사는 작년 4곳뿐

경주시는 2013년 1월 시내 중산가에 자 리 정은 벨루스관광호텔을 46억원(건물 7 억원, 토지 39억원)에 사들였다. 노인종합 복지관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1982년 준 공된 노후 호텔이었지만 정밀 안전진단 없이 매입했다. 이후 이 건물은 안전진단 최하 등급(Ⅲ)을 받아 철거됐다. 경주시는 건물비와 철거비 11억원만을 냈다. 이 건식 전 김제시장은 2009년부터 2013

### 지자체 행사·축제 손실 3554억원

지자체가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축제와 행사도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다. 지역경 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지 자체 축제·행사는 472건이다. 전국에서 하루평균 1.3개의 축제·행사가 열린 셈이 다. 광역자치단체는 59억원 이상, 기초자 치단체는 39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 축제·행사를만들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축제·행사의 적자 규모는 3554억원으로 전년(3312억원) 대 비 7.3% 늘었다. 2014년 2561억원이었던

### 적자 규모는 이듬해 3000억원을 넘어선 등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적자 규모는 이듬해 3000억원을 넘어선 등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작년 지자체 행사·축제 가운데 흑자는 △전남 곡성군 ‘국성세계장미축제’ △전 남 함평군 ‘대한민국 국화대잔치’ △전남 비대축제’ △전남 여수시 ‘여수기복선축 제’ 등 네 건에 불과했다. 여수기복선축제의 흑자 규모는 100만원이었다.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와 ‘홍익상사아 리아 및 진주대항 승선 기항행렬’은 본진 차기를 했다. 나머지 466건은 모두 적자 를 냈다. 적자폭이 컸던 행사는 ‘전국제 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126억원) 부산국제영화제(63억원)’, 2017 ITU 탈레

### 김립드(38억원) 등이다.

지자체 축제·행사는 관광객 유치와 주민 화합, 문화 진흥 등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직을 과사하고, 장외입지를 다지기 위해 적자 큰 행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작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재선 등을 노리고 안건을 높이기 위해 축제·행사를 연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예산 낭 비 등 부작용이 큰 만큼 행사 비용과 효과 를 면밀히 따지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환 기자 hwonh@hankyung.com

# “지자체 재정 감시감독 강화 시급… 외부감사제 도입해야”

美 등 해외선 외부전문가가 감사 지자체 재무제표 결산 때 회계사 ‘검토’→ ‘감사’로 격상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방의회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서울시 의회 100석 중 97석, 경기도 의회 129석 중 128석 등 지방의회에 여당 의원석이 압도적이다. 이원회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재

지자체 재무제표 결산 단계



을 연구 분석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 는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검토’ 를 ‘감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 현재 지자체들은 재무제표를 결산 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고 있다. 검토는 감사에 비하 면 느슨한 수준의 회계 검증이다.

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회계 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밀한 실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면밀히 따진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지자체 중심의 예산 집행 방 식을 확대하면 감사인 검토만으로 제 대로 된 회계검증을 하기 어렵다”며 “외부감사를 도입해 지자체의 회계투 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허수정 기자 |skim1028@hankyung.com

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감시 장 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 내 회계총괄 책임자인 회계책임관이나 의회 예산전문위원을 지자 체장이 선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 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 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미국 등 해 외 선진국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 자체 결산서와 사업집행 등을 감사하 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회에 산정체처처럼 지방정부에도 재정 운영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재

# 2022년 국세 20兆, 지방세로 이전 준비 안된 지자체 ‘방만한 집행’ 우려

## 지방분권 강화의 명과 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소비세율(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을 2020년까지 21%로 10%포인트 올리는 ‘재정분권안’이 지난 10월 말 처음 공개되면서 첫걸음을 뒀다.

그러나 회계처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지방분권 강화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정부 계획대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7대 23이었던 국세(265조원)와 지방세(80조원)

비율은 2020년 74 대 26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0 대 30으로 바꾸는 게 정부 목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조여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간다.

지방세는 징수와 집행 체계상 회계처리 상황을 투명하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서울 지방소득세만 해도 징수는 25개 구청이 나눠 하지만 세입 예산으로 잡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가 각종 교부금 형태로 구청에 재배분한다.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업무 이관의 적절성을 따지고 회계구조 등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ns@hankyung.com](mailto:ins@hankyung.com)



[발표자료]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8.12.19

**박 영 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 CONTENTS

---

I.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 현황

II.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도개선 과제

I .

#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 현황

있으나 마나 타당성조사 ...

- 사업부서 주도적 수행  
“심판이 선수까지”
- 수요 편의 과다산정  
“내 돈 아닌데 뭐”
- 결과 검증 부재  
“일단 하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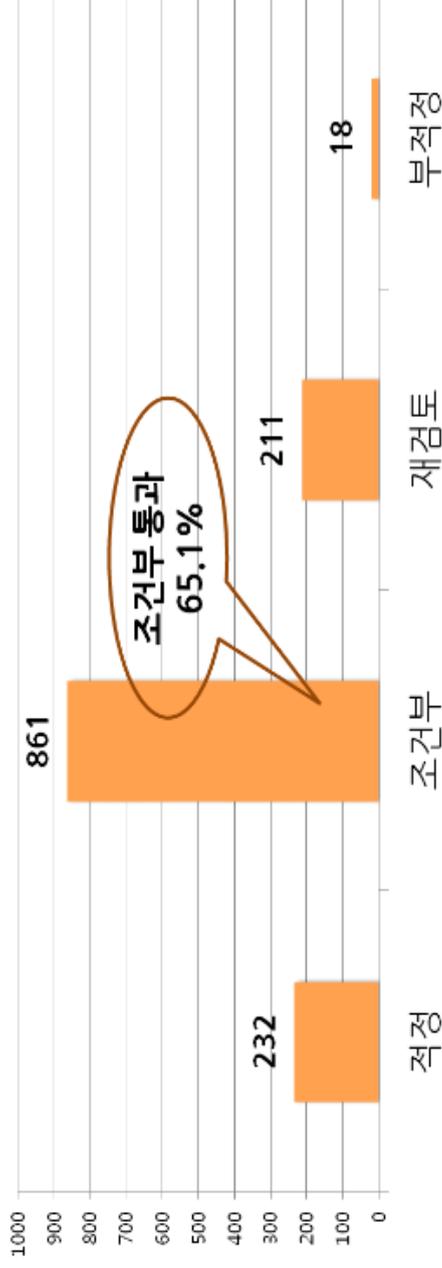
[내 세금낭비 스톱] 누슬어가는 112억짜리 '한강 크루즈'

[중앙일보] 입력 2011.05.14 00:08 / 수정 2011.05.14 00:13



### 형식적 투자심사제도 ...

- 전문적 심사역량 부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아, 복잡해!”
- 관심사업 관용적 심사 “높으신 분이 하는 사업인데 ...”
- 조건부 통과 남발 “책임은 일단 피하고 보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배경

## I.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 현황

### 시끌시끌 민간투자사업 ...

- 시작·협상·운영 전(全) 단계의 관리시스템 미흡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 전문적 검토 부족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좀 도와줘!”

- MRG 부담 시 재정 악화

“난 가난해도 서울은 부자니까”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 투자사업 합리화

투자사업의 재무성·경제성 검토를 보완하여  
시민편익이 극대화되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 도모

#### 평가시스템 전문화

각종 지침, 규정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심사시스템의 전문성 확보

#### 의사결정 투명화

외부전문가 자문 및 센터의 중립적인 분석·검토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심사제도 운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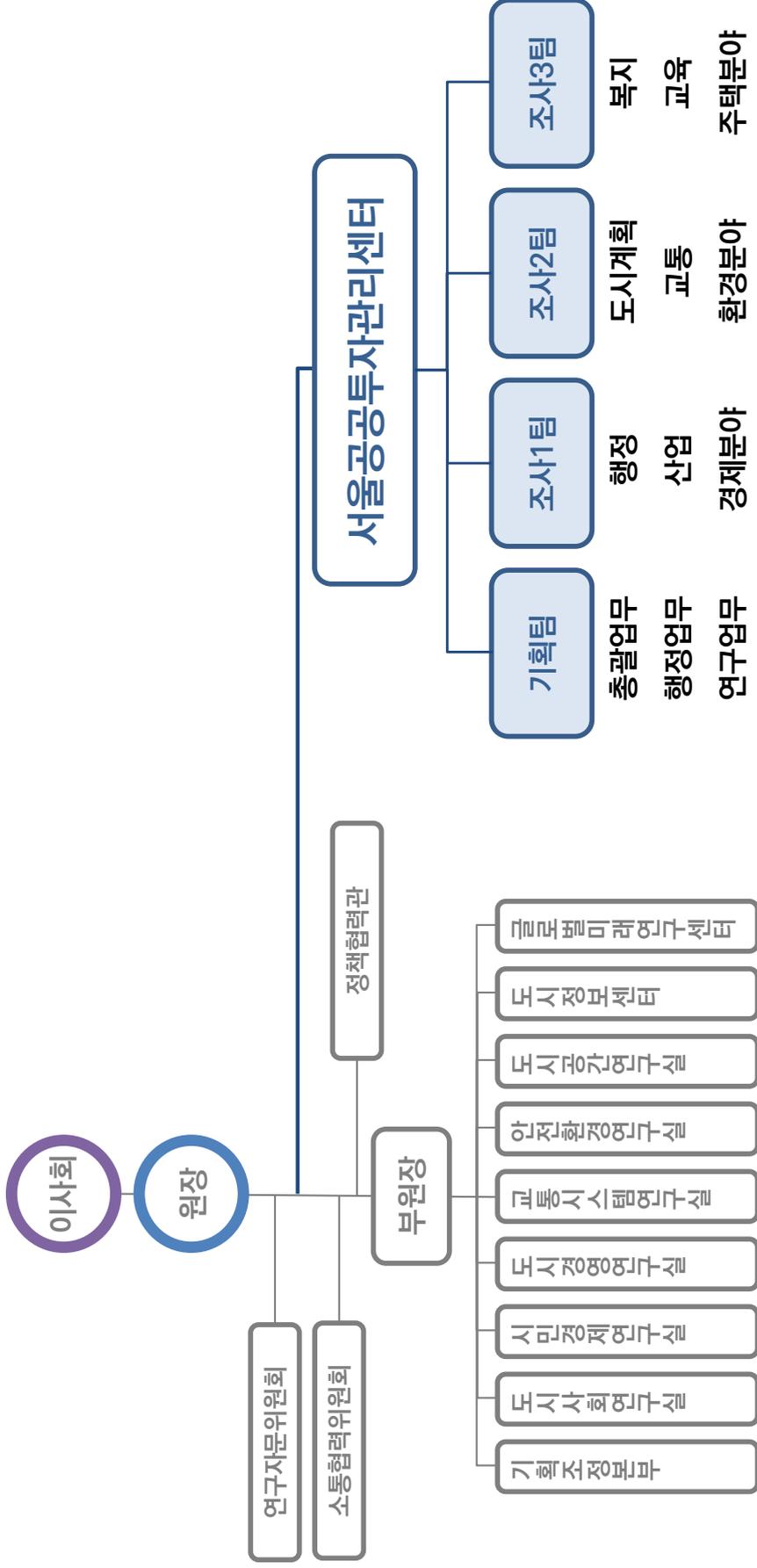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설립배경** 서울시 투자평가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2012년 서울연구원 내 설치

**설립근거**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2014.3.20.)

**조직** 1소장 4팀(기획, 조사1, 2, 3팀) 체제, 정원 박사급 6명 석사급 16명

\* 2012년 설립 당시 : 1소장 3팀, 정원 박사급 4명 석사급 3명(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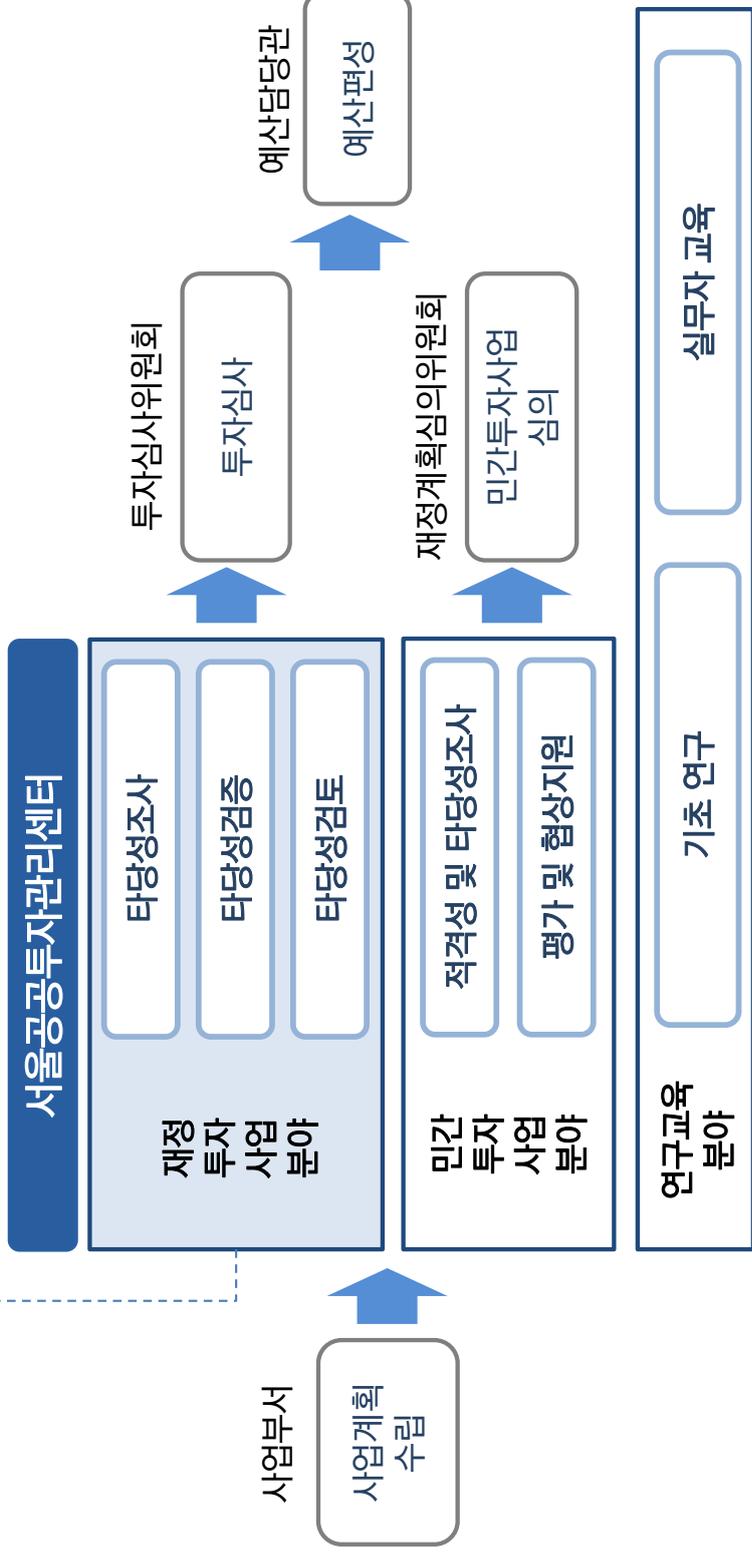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 I.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 현황

### 업 무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연구·교육 업무 수행

- 타당성조사 : 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진법 대상사업 및 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 타당성검증 : 센터 외 他 기관에서 수행된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 타당성검토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재무성 등 타당성 검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도적 근거

- ◆ 서울공투센터의 조직 설치 근거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
- ◆ 센터의 업무는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련 법령, 규칙 및 실무지침과 민간투자법 등에 규정

## 재정투자사업분야

타당성검토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서울특별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타당성검증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민간투자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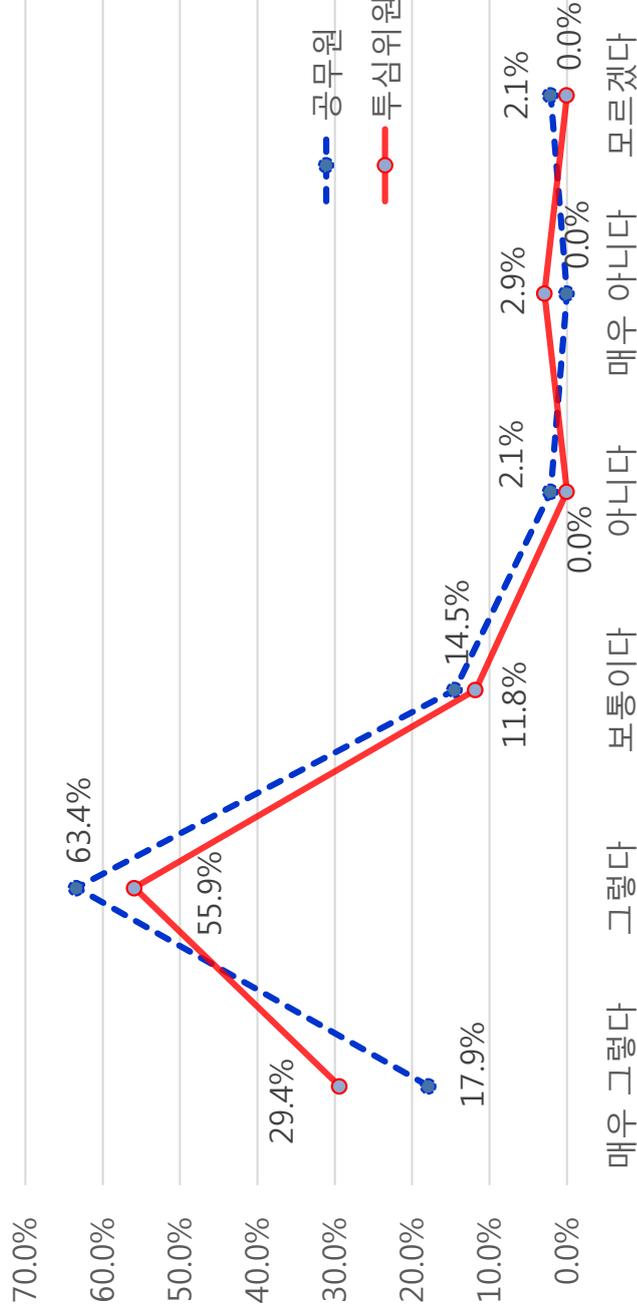
적격성 및 타당성조사, 평가 및 협상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타 개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
---------------------------	---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도입효과

- ① 재정건전성 향상
  - 40억 원 이상 재정투자사업의 분석 업무 수행
  - 사업비 절감 및 사업추진 보류 등 재정지출 효율화 성과 달성
- ② 투자평가시스템의 객관성 향상
  - 주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분석 업무 수행 시 외부전문가그룹 참여
  - 市 투자사업 전반의 객관성 향상에 기여
- ③ 투자평가시스템의 투명성 향상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공급의 적정성,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경제성분석 실시
  - 市 투자심사 과정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
- ④ 계획단계 업무 전문성 향상
  - 공공투자사업의 분석방법 및 평가기준 개발·제공, 교육·세미나·워크숍 개최
  - 사업부서 담당자의 계획수립능력 향상에 기여

## ◆ 센터의 업무가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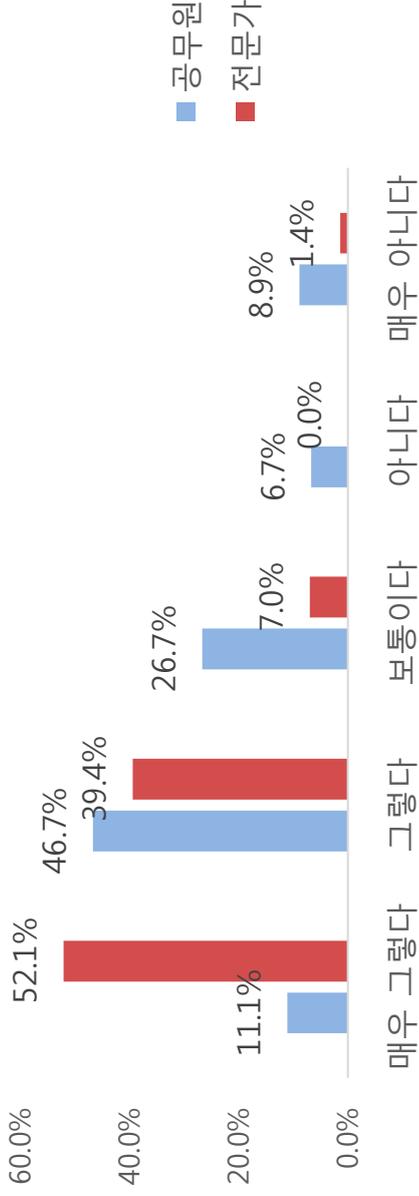
-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모두 센터의 역할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
- 공무원 보다는 투자심사위원(전문가)이 센터 의견을 보다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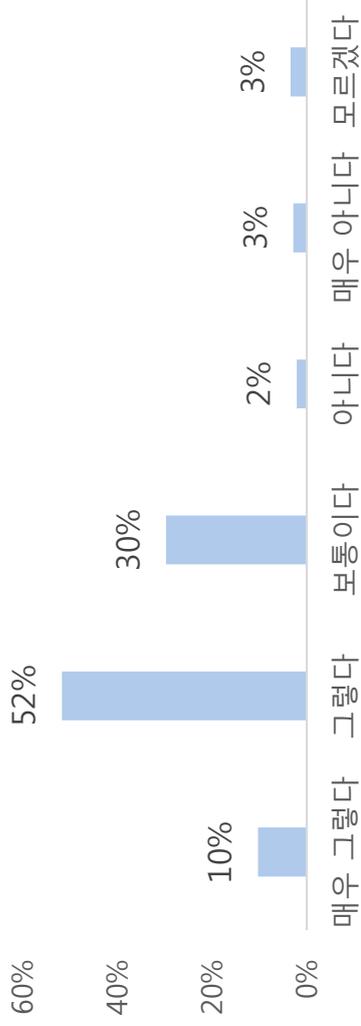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5주년 기념 세미나(2018.5)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효과

## ◆ 센터의 업무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인가?



## ◆ 센터에서 제시한 의견이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5주년 기념 세미나(2018.5)

# II.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도개선 과제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필요성

##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등장 배경 - 외부적 요인

- ①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한정된 자원의 딜레마
  -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uncontrollable spending) 확대
  - 도시재생 및 노후인프라 교체 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투자 가용 자원의 한정
- ② 공공부문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 강화
  -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
  -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감시와 비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책임 논란
- ③ 지방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재정 운용 역량 강화 필요성
  -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정책
  - 지방소비세 개정 등을 통하여 약 3조 3,000억 원 등 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

### ※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① 투자사업 분석 등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
- ② 한정된 자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객관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관

###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등장 배경 - 내부적 요인

- ① 부실한 사업계획과 형식적인 사후관리로 인한 재정투자사업의 악순환
  - 사업기간 중 사업비 증가 또는 운영단계 재정 부담 증가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사업 효과 반감
  - 단순히 투입을 통제하는데 재정관리 시스템의 초점
- ② 유명무실한 투자심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
  - 관용적인 심사 관행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 목적
  -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책적 타당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
- ③ 중앙부처들의 개별 사업 평가 심화에 따른 준비 필요성
  - 지자체간 국비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가 과정보도 심화
  - 중앙부처 별로 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 ※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 ①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
- ② 국비확보 등 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을 기관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필요성

##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한정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 조직**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
  - 개별 사업의 의사결정은 투자심사위원회가 하고 센터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팡이, 네비게이션 등 안내자의 역할에 초점
- 재원의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LIMAC)와는 역할 구분
  - 최종 예산 투입 여부 결정을 위한 게이트 키퍼, 파수꾼 등 감시자의 역할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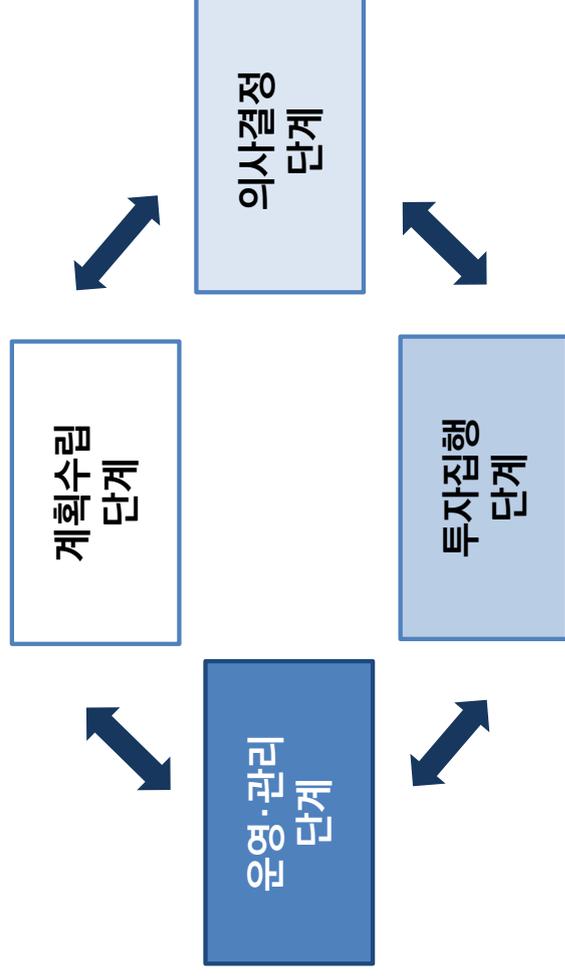
※ 국가/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비교

구분	국가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LIMAC)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 충남 등)
업무 목적	개별 사업의 예산 투입 타당성 판단	개별 사업의 예산 의사결정 지원 대안 모색/투자 우선순위 검토
수행 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포함 여부 등)	재원에 상관 없이 40(30)억 원 이상 검토
비용 부담	기획재정부/의뢰 자치단체	자치단체
업무 근거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필요성(종합)

-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객관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공공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의 중심점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과 한계

##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산하 조직 설치의 타당성

- ① 종합 연구원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전문성
  - 해당 자치단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사업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그룹 보유
- ② 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
  - 조직의 빠른 설치와 적은 초기 비용 부담, 일반행정 및 기타 제반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절감
  - 기존 연구직과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 ③ 지방 연구원의 위상 제고
  - **정책예산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연구 실행화에 기여**
  - 정책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시의성 높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

- 자치단체별의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출연연구원 산하에 자생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한계**
  - 현재는 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따라 제도적 근거나 업무가 제각각
- 표준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 제도 개선 필요성

- ①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설치 및 업무 수행 근거 부재
  - 민간투자 업무는 업무 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민자전문기관 지정), 업무 비중이 큰 **재정투자** 업무는 **법률 근거가 부재하고 조례, 지침으로 규정**
  - 「지방재정법」, 하위법령 등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및 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② 조직 안정성 보장 필요
  -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직의 위상 보장 (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 교체에 따른 영향 최소화, 자치단체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 조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인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정규직), 민감한 정보 유출 차단
- ③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사업계획 단계별 업무 지원, 사후 평가 업무를 통하여 사업 생애 전주기 관리
  - 단계별 업무가 전체 예산 시스템에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적 검토 체계 구축

### ◆ 제도 개선 방향

- 지방자치 정신 및 자치재정권에 입각한 제도 운영
  - 중앙 부처 위주의 업무 비율을 높여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중앙의존성을 높일 뿐이므로 정부는 자체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 중앙정부는 시·도 자체심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 중앙심사가 모두 전문적·객관적일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시·도 자체심사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는 의뢰심사 비중을 높이기보다 **시·도 자체심사제도의 정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할 필요
  - 또한 청사, 문화·체육 시설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를 위한 기준 마련**과 경제성분석 등을 위한 **지침을 개발** 보급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은 ①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과

②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 가능

# 제도 개선 실행(안)

## ① 투자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업무의 제도적 근거 마련

### ◆ 업무의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 부담 해소 필요
  - 위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심사의뢰서만으로 사업을 판단하는데 한계
  - 투자심사 관리 부서 2~3명이 연간 150건 이상의 심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무리
- 자치단체의 경우 부서간 경계가 모호하므로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
  -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또는 기재부와 타 부처의 경우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가 분업화 되어 있으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연결 객관적 평가에 한계
-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필요
  - 공무원의 경우 순환근무제로 인하여 평가 노하우가 축적되는데 한계
  - DB 구축 등을 통하여 유사 사업 추진 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

# 제도 개선 실행(안)

## ① 투자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업무의 제도적 근거 마련

### ◆ 제도적 근거 마련(안)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업무를 지방재정법에 규정**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3항을 신설하거나 1항을 일부 개정
-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지침의 절차상에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

#### ※ 지방재정법 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안)

-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 이하 생략-
-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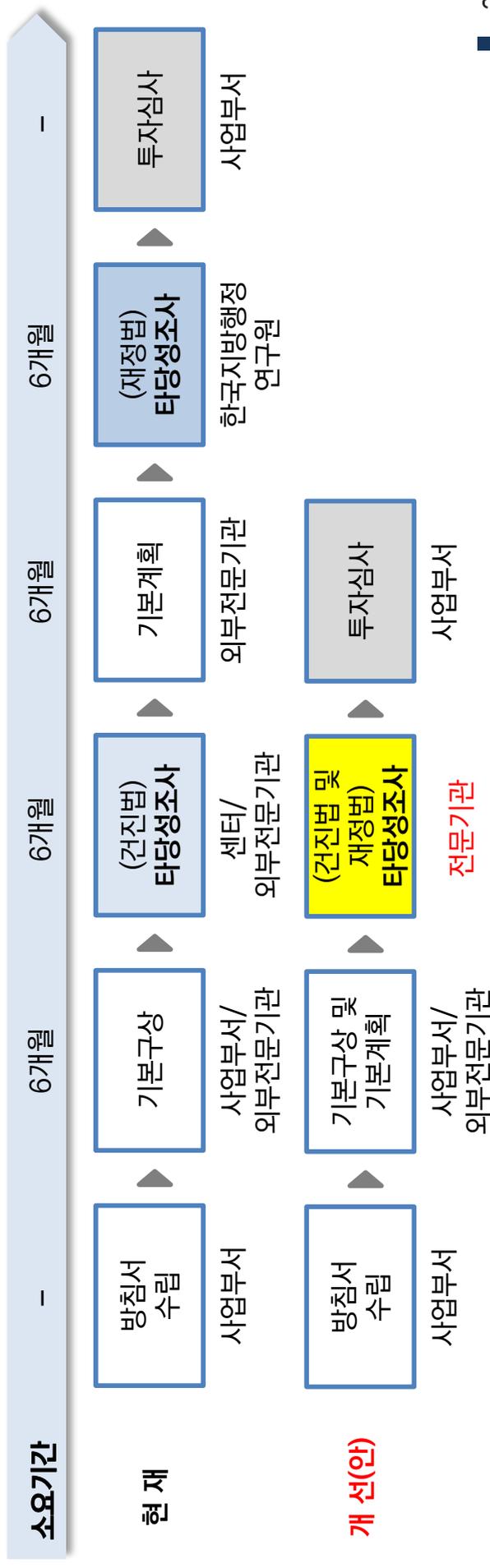
# 제도 개선 실행(안)

## ②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 ◆ 타당성조사 이중 수행에 따른 한계

- 사업부서 및 시 투자심사 부서의 **업무부하 증가 및 사업 지연으로 투자사업의 적기 투자에 한계**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투자심사까지 약 2년, 조사 의뢰 비용이 약 1억 원 이상 소요되어 지방재정 부담 증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건진법 타당성조사, 교통체계효율화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어 동시에 두 가지 타당성조사 추진이 가능

- **행안부령 지정 전문기관을 자격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평가기준 등에 따라 추가 지정할 필요**



# 제도 개선 실행(안)

## ②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 타당성조사 사례 결과(B/C) 비교 : ○○공원 재생사업 (2016)

-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모두 수행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조사범위나 경제성분석 결과(B/C 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

조사결과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서울연구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비 (백만 원)	67,665	67,106
B/C	1.22	1.23
조사범위 (내용)	제1장 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장 타당성조사의 개요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3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4장 비용추정	
	제5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4장 수요 추정
	제6장 경제성 분석	제5장 편익 추정
	제7장 재무 분석	제6장 경제성 분석
	제8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제9장 운영부문 민간참여의 적정성	-
	제10장 정책적 분석	제6장 정책적 분석
	제11장 결론	제6장 종합결론

# 제도 개선 실행(안)

## ②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성

- 해당 자치단체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가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단축이 가능**
- 조사 결과 등은 행정안전부 또는 **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품질 관리가 가능**
- **사업 재원이나 지역 분야 등에 따라 중앙부처 지정 기관 또는 지방공투가 타당성조사 대상을 분담**

※ 타당성조사 역할분담(안)

구분	중앙부처 지정기관 (LIMAC)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 충남 등)
재원 구분	정부 보조금 포함 사업	전액 자체 재원 사업
지역 구분	두개 이상의 광역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별도의 공투 센터가 없는 지역 사업 재정위기 단체 지역 사업	해당 지역 사업
분야 구분	청사 사업, 산업단지, 교통개발 등의 대규모 지역 개발 또는 광역 개발 사업	생활형 SOC 사업/ 환경 시설 등 지역 생활 밀착 사업

#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노력

- ◆ 자치단체 스스로 건전재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량 확보
-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간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작성 시 긴밀한 협의 등

***Thank you!***

**ympark@si.re.kr**